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 대상

-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 등록번호를 가진 자 또는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및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

##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 기준

### + 외국교육기관 허용 기준

- 교육기관 소재국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고, 국가 기관에 의해 학력인정 확인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단, 순수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을 인정함.

### +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대상자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외국에서 공부한 경우)

- 1개 국가의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년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년수

- 기타
  -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검정고시, 훌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기타 학력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1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3

구분	고졸	대학 재학·제작*	대학 대졸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내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내국인 외)	○ ○ ○	
학력 확인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 재학 또는 제작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졸 학력자로 12학년 미만 이수 학습자에 한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  
(온라인 접수 불가).

※ 각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습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학력인정확인

4

- 학력인정확인은 해당 국가기관을 통해 정규학교 여부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해당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 시 '학력인정확인서'의 대체서류로 인정됨.
  - 이 외의 국가(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 등)는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해당국 교육법령에 의거한 정규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및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안 될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단,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새터민의 경우 시·군·구 거주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담당자가 발급한 [학력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한 북한이탈주민학력 인정 [학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

5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시 초·중·고 재학기간 및 재학년수를 요약 기재할 수 있는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양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일람방] – [자료실] – [학습자신청양식] 581번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에 탑재



## 각 사례별 제출서류 예시

6

구 分	제 출 서 류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1.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통 2.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중간에 전학경험이 있을 경우)	예) A고등학교에서 B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1. 초등학교·중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통 2. A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각 1통 B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통 3. B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예)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 1. 한국 당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혹은 성적증명서), 제적(자퇴) 증명서(혹은 정원외 관리 증명서) 각 1통 2. 외국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통 3.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1.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통 2.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제출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제출하여야 함.
- \*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을 위해 전 과정 교육기관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 한 경우에는 재학기간과 졸업년도가 명시된 성적증명서 발급 불가 사유서(확인서) 등이 대체서류 인정 가능함.
- \* 졸업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해당대학장이 발급한 확인서 및 졸업장으로 대체가능함.

## Q&A

7

### Q1 외국인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까?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자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 번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중 하나를 부여받은 경우)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 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혹은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2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에서는 외국대학 졸업학력 인정을 통한 타전공 학위과정 등록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전문학사(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학사(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거나, 외국에서 대학을 제적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Q3 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Q4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총 12년 미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Q3과 같이 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해당국에서 초·중·고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볼니다. 따라서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외에서 총 12년 미만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12년 학제 부족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국 대학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 이수학년을 심의하여 부족한 이수기간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 Q5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학력인정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학력인정확인서란, 학습자가 졸업 혹은 제적한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기관인지를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국가 공공기관을 통해 정규학교 여부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이 아니므로 중국 소재 한국영사 확인 혹은 중국 교육부 학력 및 학위인증센터 부분 업무 대행기관인 ‘서울 공자아카데미’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화민국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교육처에 이메일로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학교인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 공자아카데미 : 홈페이지([www.cis.or.kr](http://www.cis.or.kr)), 연락처(02-554-2688)

\*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 홈페이지([www.chinaedukr.org](http://www.chinaedukr.org)), 이메일(jiaoyuchu@chinaedukr.org)

### Q6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학력인정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졸업한 대학의 학력인정확인서는 ‘한미교육위원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학 학력에 한함). 또한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대학의 졸업증명서를 ‘아포스티유’ 서류로 발급받아 제출 시 ‘학력인정확인서’의 대체서류로 인정합니다. 단, 아포스티유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학의 학력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한미교육위원회 : 홈페이지([www.fulbright.or.kr](http://www.fulbright.or.kr)), 문의처(02-3275-4011, usec@fulbright.or.kr)

\* 아포스티유 문서의 발급은 당해국로부터 가능하므로 해당국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하여 해당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받거나 서류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